

2025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(R&D)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

I

2025년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(R&D) 사업 지원 안내문

■ 공고대상 사업

1-1.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(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)	3
1-2.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(혁신주체 네트워크)	10
2-1.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(일반형)	16
2-2.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(유니콘 프로젝트 1단계)	28
3-1. 이노폴리스캠퍼스(지역 인력 양성 지원)	38
3-2. 이노폴리스캠퍼스(기업가 정신 교육)	44
3-3. 이노폴리스캠퍼스(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)	51
3-4. 이노폴리스캠퍼스(엑셀러레이팅 지원)	57
4.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	63
5.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	69

■ 신청방법 및 절차

-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(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)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t.go.kr)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www.innopolis.or.kr)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- 사업설명회 : '25. 2. 5(수), 14:00 /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컨퍼런스홀
- 공고 및 접수기간

사업명	공고기간	접수기간
1.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	'25. 1. 17.(금) ~ '25. 2. 18.(화)	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
2.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	'25. 1. 17.(금) ~ '25. 2. 18.(화)	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
3. 이노폴리스캠퍼스	'25. 1. 17.(금) ~ '25. 2. 18.(화)	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
4.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	'25. 1. 17.(금) ~ '25. 2. 18.(화)	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
5.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	'25. 1. 17.(금) ~ '25. 2. 18.(화)	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
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 -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

※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.

(접수기간 마감 후 온라인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차단되며, 신청(제출)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처리 불가)

- 접수처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
■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

-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사업명	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 (@innopolis.or.kr)
1.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				
1-1. 전략기술 발굴 및 매칭	혁신기업지원실	박수연	042-865-8971	psy1114
1-2. 혁신주체 네트워크	기술창업지원팀	최광욱	042-865-8981	kwchoi
2.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				
2-1. 일반형	기술이전 기업	혁신기업지원실	윤주한	042-865-8974 jhyoun55
	연구소기업	기술창업지원팀	공혜원	042-865-8985 intender12
2-2. 유니콘 프로젝트	기술창업지원팀	최광욱	042-865-8981	kwchoi
3. 이노폴리스캠퍼스				
3-1. 지역 인력 양성 지원	기술창업지원팀	김슬기	042-865-8987	knkskkkr
3-2. 기업가 정신 교육	기술창업지원팀	이대기	042-865-8986	sinni0519
3-3.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	기술창업지원팀	이대기	042-865-8986	sinni0519
3-4. 엑셀러레이팅 지원	기술창업지원팀	최광욱	042-865-8981	kwchoi
4. 지역 혁신 실증 프로젝트 기획	혁신기업지원실	박수연	042-865-8971	psy1114
5. 지역 혁신 실증 스케일업				
- 일반형	대덕특구 소재 기업	혁신기업지원실	이민규	042-865-8973 mrleemingyu
	대덕특구 연구소기업	기술창업지원팀	이대기	042-865-8986 sinni0519
- 대형		혁신기업지원실	박수연	042-865-8971 psy1114

1-2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(혁신주체 네트워크)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대덕특구 내 혁신주체(대학·출연연 등)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, 기술이전 촉진·유망기업 발굴·성장지원 등 기술사업화 협업생태계 강화

□ 사업내용

- 대전지역 내 기술창업 혁신주체 협의체(공공연구기관, 기업 등)를 조성하고, 유망 기업 발굴 및 지원·투자연계 등 기술창업 지원 촉진
 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대학·출연연·AC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
- 혁신 전 단계(R&D 기획 ⇒ R&D ⇒ 기술이전·사업화) 주체 간 융합을 포함하는 오픈 R&BD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구 내·외 주체 간 융합 네트워킹 지원
 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각 1개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분야에 대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

2. 지원내용

□ 2025년 예산규모 : 총 200백만원 이내

- 총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□ 신청자격 :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 (컨소시엄 가능)

*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관련분야 업무경력 최소 5년 이상

□ 지원내용

- (성장·투자분야) 대전지역 내 기술창업 혁신주체(대학·출연연·AC 등)간 협의체를 구성하고, 유망기업 발굴, 성장지원, 투자 연계 등을 협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추진
- (기술거래 분야) 국가전략분야 및 딥테크 중심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·사업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며,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아젠다 발굴 및 협력성과 창출 활동 등 지원
- (기타) 대덕특구 기술산업화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과 성과 확산을 위한 혁신 주체 간 협력활동 등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: 전액(100%) 정부지원연구 개발비 지원

□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: 해당없음

□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: 연구장비 계상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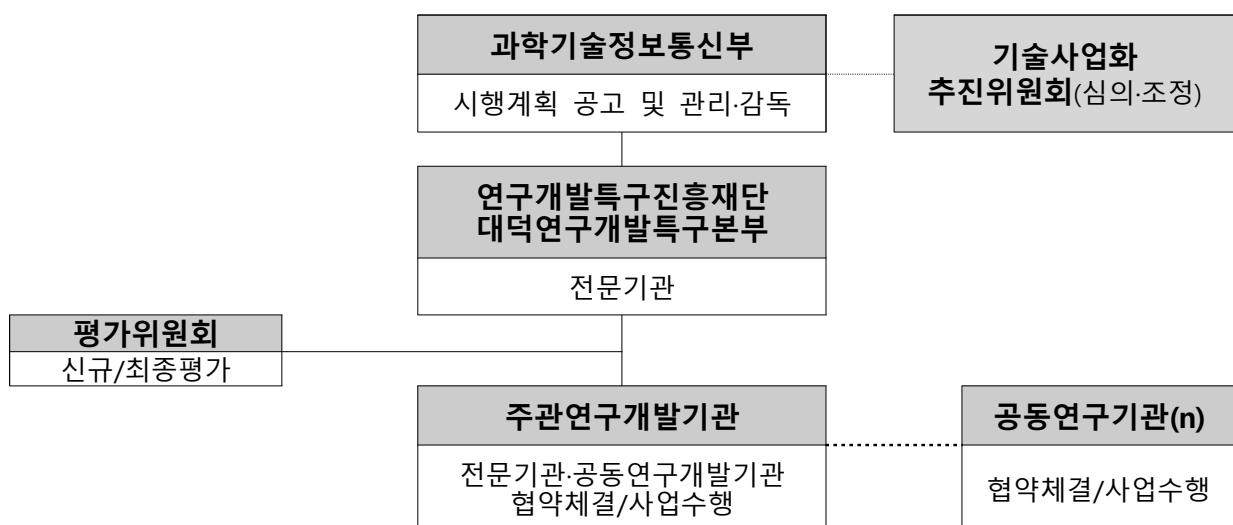
-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: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‘동시수행과제수 제한’ 과제에 해당함
 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
 - ※ 단,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
 -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,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,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
 -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, 사후 적발될 경우,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

< 관련법령 및 규정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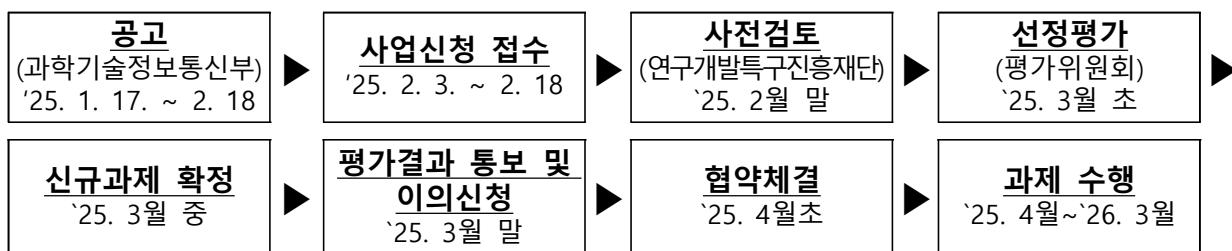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: 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,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제35조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,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 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과기정통부 고시)
 - '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(안)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, 2023.12.7.)
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- 사업 추진체계



추진절차



*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. (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)

4.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

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비중(%)
수행기관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(특구 및 국가전략기술)에 대한 이해도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	30
추진계획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	50
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, 경제적, 지역적 파급효과 	20
계		100

*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/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평가방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, 발표평가, 현장방문평가, 토론평가,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
*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 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
-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 1:1 이하의 단독 미응모의 경우,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
 -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: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,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

□ 우대사항 : 해당 없음

□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: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
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(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 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 등)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1점)

□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: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21년도~'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(국세청(홈텍스)발급)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* 접수마감일 기준 '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('23년도)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-----------------------	--

- ※ 단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·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- ※ 선정평가 이후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5. 신청방법 및 절차

사업공고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<https://www.ntis.go.kr>)
- 연구개발특구포털(www.innopolis.or.kr)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

신청방법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
-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(세부사업, 내역사업명 등) 후 신청 접수 · 완료

※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별첨.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)

접수기간 : '25. 2. 3.(월) ~ '25. 2. 18.(화), 15:00까지(IRIS 시스템 시간 기준)

제출서류 :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(PDF, 한글, 엑셀)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

번호	서 류 명	서식	비고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주관기관 제출
2 (필수)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	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
3 (필수)	사업자등록증	-	모든 기관 제출
4 (필수)	법인등기부등본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모든 기관 제출
5 (필수)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※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	서식 3호	모든 기관이 공통 날인하여 제출
6 (필수)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4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7 (필수)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흠태스 발급분	-	최근 3개년도('21 ~ '23)(비영리기관 제외)
8 (필수)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최근년도기준, 모든 기관 제출(비영리기관 제외)
9 (필수)	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(원본대조필)	-	해당기관(기술거래기관 지정서,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,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(연구관리업종) 등)
10	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(실적증명서 등)	서식 5호	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(최근 3개년, 최대 5개 이내)
11 (필수)	참여연구원 정보	서식 6호	엑셀 양식에, 과제참여인력(주관/공동) 정보 기입 후 제출
12 (필수)	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 인서	서식 7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
번호	서 류 명	서식	비고
13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	서식 8호	해당 시 제출
14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	서식 9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15 (필수)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서식 10호	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

신청 시 주의사항

-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
-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(신청항목)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'제출완료'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(과제)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.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등록 제출
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,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
-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,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

- 문의처(담당부서)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
 ○ 담당자 : 최광욱 선임연구원(kwchoi@innopolis.or.kr/042-865-8981)

6. 기타사항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 하여 조정될 수 있음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,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